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추첨 공급이 원칙이나 산업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지정권자에게 기업과의 입주협약을 요청하더라도 지정권자는 입주협약 검토·추진의 행정력 부담으로 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투자 의향 기업들의 투자 철회가 우려되는 등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산업단지에 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일정기간이 도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초지자체와 기업간 입주협약을 통한 수의계약 허용(안 제42조의4제4항)

현재 산업입지법은 지정권자(시·도지사)와 기업 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관리권자로서 준공 후 산업단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초지자체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의 신속한 유치를 위해 일반산업단지의 수의계약 범위를 사업시행자인 기초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허용하고자 함.

나. 국가산업단지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확대(안 제49조 별표3)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있으나, 10년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개발계획 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임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3. 10. ~ 2023. 11.)

대통령령 제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에 적합한 경우

별표 3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 중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산업단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의4(개발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 ~ ③ (생략)	제42조의4(개발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에 적합한 경우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9호 바목의 사업 중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 -----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별표 3] 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3] 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설>	19.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 중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산업단지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83